감사위원회 운영규정

신세계건설 주식회사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감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 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직무와 권한)

- 1.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- 2.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리·감독한다.
 - ① 내부감사부서 및 외부감사인
 - ② 내부고발제도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 운영여부
 - ③ 내부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 유지 여부
 - ④ 기타 감사위원회의 관련 정책, 절차 및 보고
- 3.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,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- 4.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, 해임에 대하여 결의한다.
- 5. 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6. 제 5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7. 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6 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 2 장 구성

제 4 조 (구성)

- 1.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.
- 2.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3.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,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1 제 3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**4.** 위원 중 **1** 인 이상은 상법 제 **542** 조의 **11** 제 **2** 항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.
- 5. 기타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따른다.

제 5 조 (위원장)

- 1. 위원회는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
- 2.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3.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의

제 6 조 (종류)

- 1.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- 2. 정기위원회는 분기마다 1 회 개최한다. 단, 부의사항이 없을 경우 개최하지 아니한다.
- 3.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7 조 (소집권자)

- 1.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5 조 제 3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2.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단,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 (소집 절차)

- 1.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, 그 2 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.
- 2.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9 조 (결의 방법)

- 1.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2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 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10 조 (부의 사항)

- 1.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(1)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- ①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
 - ②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
 - (2)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 - ① 이사회에 대한 보고 의무
 - ②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
 - ③ 이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
 - ④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
 - ⑤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 - (3) 감사에 관한 사항
 - ① 업무, 재산 조사
 - ② 자회사의 조사
 - ③ 이사의 보고 수령
 - ④ 이사와 회사간의 소 대표
 - ⑤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 제기 결정 여부
 - ⑥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, 해임에 대한 제청 승인
 - ⑦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한 부정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
 - ⑧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 처리 등에 관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
 - 9 감사 계획 및 결과
 - ⑩ 중요한 회계 처리 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
 - ⑪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
 - ⑫ 외부감사인의 감사 활동에 대한 평가
 - ③ 감사결과 시정 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
 - ⑭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

제 11 조 (관계인의 출석 등)

- 1.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2.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의사록)

1.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2.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 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3 조 (간사)

- 1. 위원회는 간사를 두고 인사팀장이 이에 임한다.
- 2.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,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.

제 4 장 외부감사인의 선임 등

제 14 조 (외부감사인의 선임)

- 1.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한다.
- 2.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매 3 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.
- 3. 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하는 때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보수 및 감사 시간에 관하여 회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제 15 조 (외부감사인의 변경)

회사는 외부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되어 외부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

- 1.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(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)
- 2.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
- 3.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 처분(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
- 4. 기타 외부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제 16 조 (외부감사인의 해임)

회사는 외부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 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.

- 1.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
- 2. 외부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
- 3.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
- 4.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외부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

5.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 또는 동법 시행령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 결과 외부감사인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

제 17 조 (전기 외부감사인의 의견 진술권)

- 1. 위원회는 직전 사업연도에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행한 외부감사인(이하 "전기 외부감사인"이라 한다) 외의 다른 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하거나 제 16 조에 의하여 외부감사인 해임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 외부감사인 및 해임되는 외부감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2. 회사는 전 항의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10 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- 3. 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외부감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진술한 의견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8 조 (독립성 확보)

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,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.

제 19 조 (의견 교환)

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, 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.

제 5 장 보칙

제 20 조 (감사록의 작성)

- 1.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2.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21 조 (규정의 개정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
1. 본 규정은 2016.03.11 부터 시행한다.